

안전점검 협약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구간(이하 “고속도로”라 한다)에 대한 전담 안전점검원 배치용역에 대한 시행방법 및 안전점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호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구간 및 범위)

시행구간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고속도로 공사구간으로 하고, 사업의 범위는 공사시행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하며 비용의 부담관련 사항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시행기간)

추정 시행기간은 예정공정표에 의거 산정하며, 협약서 체결 후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원을 배치하여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구조물 시공완료(설계강도 발현기간 포함)시까지 하되, 별도의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주체)

- 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고속도로 관련구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본부”는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 가. 안전점검원 배치용역 설계 및 발주
 - 나. 안전점검원 관리 및 감독
- ② “을”은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가. 안전점검원이 고속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수행을 함에 적극 협조한다.
 - 나. 필요시 안전점검원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 다. 안전점검원에게 설계도서 및 계측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5조 (시행방법)

- ① “수도권본부장”은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산출 후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한다.
- ② 용역의 시행은 협의완료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 ③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와 안전점검원 배치용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상호 협조하고, 용역시행중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하면 협조하여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비용의 부담 및 범위)

- 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점검원 배치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 및 관리감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최초 협의한 금액외에 증감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한다.)

제7조 (비용의 산정)

안전점검 비용은 고속도로 영향구간 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시기반

시설본부장”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거 “수도권본부장”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비용의 납부)

- ① 제6조에서 명시한 비용에 대하여 협약체결후 “수도권본부장”이 요청한 기일까지 “수도권본부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액납부하며, 안전점검 비용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는 “수도권본부”에 귀속한다.
- ② ①항에서 정한 규정이외에도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해 상호협의하되 별도기일을 정해 “수도권본부장”은 비용의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정산)

- ① 비용은 안전점검원 투입용역 완료후 실투입기간에 맞추어 정산한다.
- ② ①항의 정산 기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산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수도권본부장”的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 이후에도 정산지연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변경 및 해지)

- ① 이 안전점검에 대한 협약체결 이후에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비용 납부가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도권본부장”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협약 해지 시 “수도권본부장”은 사업비 잔액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반환할 수 있으며, 기 투입비용 등의 손해배상액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부담한다.

제11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상호 견해가 다르거나 이 협약에 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협의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에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2조 (책임의 한계)

본 협약체결후 안전점검원이 투입된 이후라도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에 의한 고속도로 안전에 위해 사항이 발생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그 책임을 면하지는 아니한다.

제13조 (효력발생)

- ① 이 협약은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도권본부장”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 11.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

